



Unbundling Competition

에피소드 1: 동남아시아의 경쟁법 - 동남아시아 지역의 집행 및 태국

이번 첫번째 에피소드에서는 HSF 홍콩 사무소의 파트너 및 아시아 경쟁법(독점규제법)분야 책임자인 Adelaide Luke 와 HSF 도쿄 사무소의 변호사인 Joel Rheuben 이 동남아시아와 특히 태국 경쟁법의 최근 발전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합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쟁법 체제는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 중 일부는 20년 전 아시아 금융 위기의 여파로 도입되었지만 2007년에 모든 ASEAN 회원국은 ASEAN 경제 공동체 청사진에 따라 경쟁법을 제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제정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의 법을 실질적으로 수정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규제당국의 집행 기록도 혼재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매우 활동적인 일부의 규제 당국과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규제당국을 설정하고 있는 다른 관할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요 동향은 동남아시아 규제 당국이 일반적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집행 우선 순위에 있어 더욱 정교해지고 서로 협력하며 지역의 경제 역학관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독점 금지 수단을 강화함에 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국은 1999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경쟁법을 도입한 관할권 중 하나였지만 이 법은 정치와 기업의 영향력과 태국 규제당국의 제한된 집행 권한으로 인해 불충분하게 시행되었습니다. 2017년 새로운

경쟁법인 무역 경쟁법(TCA)이 발효되어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TCA는 태국 경쟁 규제기관인 무역 경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고 다양한 주요 이슈에 대해 태국의 경쟁법을 타국의 경쟁법과 더 밀접하게 일치 시켰습니다.

또한 TCA는 태국에서 최초로 합병 통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거래당사자의 시장 점유율과 같은 요인에 따라 사전 마감 또는 사후 마감 거래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유형의 거래가 신고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국 및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거래 및 규정 준수 계획을 수행할 때 경쟁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